국민동의청원서

등록일자	2023. 8. 27.		
동의기간	2023. 8. 29. ~ 2023. 9. 28.	국민동의 수	50,000
청 원 자	성 명 김순길		
제 목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관한 청원			

청 원 원 문

[청원의 취지]

재난과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4년 4.16세월호참사 이후, 지난 10년간 사회적 참사로 전국 곳곳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어왔습니다. 올해는 수해로 예천과 오송에서 또다시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참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 발생한 것도 아닙니다. 예방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입니다. 정부가 생명존중의 가치를 우선하여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재난을 겪지 않은 시민과이미 겪은 피해자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된다면 우리 사회는 조금 더 안전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부의 대처방안만 담고 있을 뿐, 생명안전의 가치를 제대로 담고 있지 못합니다.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참사 이후의 안전한 세상을 위해 참사의 원인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 우리가 겪은 참사를 다른 누군가는 경험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합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일상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입니다.

[청원 내용]

다음의 내용을 담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청원합니다.

1. 안전권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함부로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권'은 다른 기본권의 전제이고,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 리나라는 아직 안전이 권리로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에 '사람의 안전권'을 명시하고, 정부가 안전권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2. 피해자의 권리 보장

누구라도 재난과 참사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의 권리인 '안전권'을 침해당한 이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에 피해자의 정의, 범위, 재난참사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명시해야 합니다.

3. 안전약자 보호

정부는 안전사고에 취약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환자, 어린이 등 신속한 이동이 어려운 분들에게 별도의 대피계획과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안전에 관한 정보가 차별 없이 신속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4. 독립적 조사기구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수사나 재판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구조적인 원인을 살펴보고, 대응이 적절했는 지를 따지지 못합니다. 이는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어렵게 만듭니다.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려면 재난 참사의 구조적인 원인을 파헤치는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필수입니다.

5. 위험에 대해 알 권리

안전사고에 관한 정보를 국가와 기업 등이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은폐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곳에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루는 회사가 있는지 알아야 하고, 노동자들도 자신이 취급하는 물질의 위험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위험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야 제대로 된 대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권

안전에 대한 시민의 참여도 중요합니다. 안전에 대한 여러 시민 모임을 구성하여 참여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참여를 의미 있게 만들려면 생명과 안전을 과제로 하는 시민 들의 모임에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한 정보에 대해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고,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대처 과정에서 참여하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안전영향평가

국가가 각종 정책 등을 시행할 때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실시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 안전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규제완화를 이야기하며 안전에 대한 규제마저 완화시키는 상황에서, 안전영향평가제도를 통해 안전 정책이 후퇴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여러 참사를 겪으며 시민들은 안전사회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대응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의 관점'에서 안전시스템을 제대로 마련 하려면 '생명과 안전이 기업의 이윤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가치가 형성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함께 독립조사기구 설치, 안전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책무, 시민들의 참여, 안전영향평가제도를 규정하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통해 생명존중 안전사회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